

## 대전광역시 생활보호기금 운용 관리 조례 증 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24/
----------	-----

제출일 : 1997. 2.

제출자 : 대전광역시장

### 1. 제안이유

기부금품모집규제법('95. 12. 30) 및 동법시행령 ('96. 7. 1) 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, 기금의 조성근거가 법령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골자

- 가. 기금의 조성규정을 시의 출연금, 이자수익금, 기타 수입금으로 함 (안 제2조)
- 나. 기금관리 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함 (안 제4조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
- 나. 기부금품모집규제법시행령 제14조

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

## 대전광역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대전광역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한다.

제2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시의 출연금
2. 이자수익금
3. 기타 수입금

제4조제2호중 “사회계장”을 “사회복지계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조표

현	행	개	정	안
	제2조 (기금) 기금은 1963년부터 1972년까지 지방세 수입액에서 적립한 금액으로 한다.	제2조 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		1. <u>시의출연금</u> 2. <u>이자수익금</u> 3. <u>기타수입금</u>
	제4조 (기금관리공무원) (생략) 1. (생략) 2. 기금출납원 : <u>사회계장</u>	제4조 (기금관리공무원)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기금출납원 : <u>사회복지계장</u>		

## 참 고 사 항

(관 련 법 규)

### □ 기부금품모집규제법

제5조(국가등 기부금품 모집·접수제한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  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과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. 다만,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또는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 □ 기부금품모집규제법시행령

제14조(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) ①법 제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 (국가기관의 경우에는 내무부에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를 시·도 및 시·군·자치구와 그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시·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를 말한다)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정기탁서를 기탁하고자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내무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시·도지사를 거쳐야 한다.